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443
----------	-----

2023년 2월 28일
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년 1월 31일, 김경훈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3년 2월 9일

다. 상정일자: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

(2023년 2월 28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경훈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자 선정 심의 외의 별다른 기능이 없으므로, 이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재활용육성자금 용자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(안 제6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기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피재황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자 선정 심의 외에 별다른 기능이 없는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심사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의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- 용자심사위원회의 역할은 용자 대상자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, 최근 5년간 회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, 일 년에 한 번 개최하여 육성자금 용자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(연평균 7억8천만원)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, 안 제6조제5항과 같이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며, 별도의 의견은 없음.

<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심사위원회 개최현황>

연도	개최횟수	개최방법	위원수	참석인원	회의안건
2018	1	대면	7	4	심사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(4개 업체, 8억원)
2019	1	대면	7	4	심사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(5개 업체, 8억원)
2020	1	서면	7	7	심사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(4개 업체, 6억원)
2021	1	대면	7	4	심사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(3개 업체, 5억원)
2022	1	서면	7	7	심사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(4개 업체, 10억원)

<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산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위원회 구성) ①~④ (생략)</p> <p>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2년으로 하되, 2차레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시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,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회 구성) 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
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위원회 구성) ①~③ (생략)</p> <p>④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회의회의원(이하 "시의원"이라 한다)</u>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⑤ <u>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시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회 구성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원</u>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